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283 제출년월일: 2008. 1. 4.

제 출 자:대전광역시교육감

1. 제안 이유

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 정원이 고시(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-124호,2007.11.14.)되어 정원 총수가 34명이 증원되었기,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,763명에서 34명을 증원한 1,797명으로 하고(안 제2조)
 - ※ 조례의 총정원 1,766명 중 혁신담당 한시 정원(2007. 6. 30.까지) 3명 제외
- 나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을 1,751명에서 1,785명으로 조정함.(안 제2조 제2호)
 - ※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2명은 별도로 교육위원회 조례에 정해져 있음

3. 참고 사항

가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1

나.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전국 시·도교육청 정원 현황 : 붙임2

다. 관련 법령 : 붙임3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"1,766명"을 "1,797명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호 중 "1,754명"을 "1,785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구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
제2조(정원의 총수) 에 두는 지방공무· 1,766명으로 그 나 와 같다. 1. 교육위원회 의 조례로 정한다. 2. 본청,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정원	원 정원의 총수는 내역은 다음 각호 사국 정원 : 별도 , 직속기관, 공립의	2	같음)		
부칙(조례 제3196호, 제3285호) ②(한시정원)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 되는 3명의 존속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					

《붙임2》

전국 시ㆍ도교육청 표준정원('08-'09) 및 보정정원 현황

시·도	′08~′09년		'05년	'04년	증 감		
	표준정원(A)	보정정원(B)	표준정원(C)	<u>총</u> 정원(D)	(A-C)	(B-C)	(C-D)
서울	7,154	7,368	7,553	7,358	-399	-185	195
부산	3,679	3,789	3,905	3,784	-226	-116	121
대구	2,558	2,634	2,728	2,602	-170	-94	126
인천	3,138	3,232	3,203	2,930	-65	29	273
광주	1,622	1,670	1,662	1,577	-40	8	85
대전	1,797	1,850	1,763	1,669	34	87	94
울산	1,596	1,643	1,607	1,432	-11	36	175
경기	12,569	12,946	12,204	10,212	365	742	1,992
강원	3,780	3,893	3,988	3,876	-41	-95	112
충북	3,031	3,121	3,072	2,971	-43	49	101
충남	4,069	4,191	4,378	4,257	-309	-187	121
전북	3,983	4,102	4,178	4,105	-195	-76	73
전남	4,853	4,998	5,078	5,054	-225	-80	24
경북	5,139	5,293	5,566	5,462	-427	-273	104
경남	5,374	5,535	5,605	5,397	-231	-70	208
제주	1,135	1,169	1,226	1,195	-91	-57	31
합계	65,477	67,434	67,716	63,881	-2,239	-282	3,835

[※] 위 정원에 혁신담당 한시정원('07. 6.30.) 3명은 제외된 정원임.

^{**} 보정정원 : 급격한 행정수요 발생에 신축적 대응 등 시·도의 자율성 부여를 목적으로 표준정원의 3%(53명)를 더한 정원으로, 사용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과 정원조례 개정 후 사용해야 하며,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정원임.

《붙임3》

관 련 법 령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- 제3조(표준정원의 산정)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교육청별 지 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 -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별·직급별·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"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"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을 말한다.
 -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 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 -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.

〈별표 1 표준정원 산식〉

- **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** + (5.793702 × 학교수 증감분 × 0.6 +0.1919011 × 학급수 증감분 × 0.4) × 1.15
 -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

[현정원 + {1.720094 × (학급수 ÷ 학교수)의 자연로그값} × 학교수 + 168.1659 × 2국6과 지역교육청 수 + 161.7123] ÷ 2

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. 1. 29 교육사회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. 4 대전광역시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: 2008. 1.8

다. 상 정 일 자 :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5차 교육사회위원회(2008. 1.29)
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이치범)

1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 정원이 고시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,763명에서 34명을 증원한 1,797명으로 하고(안 제2조)
 - ※ 조례의 총정원 1,766명 중 혁신담당 한시 정원(2007. 6. 30.까지) 3명 제외

- 나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을 1,751명에서 1,785명으로 조정함.(안 제2조 제2호)
 - ※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12명은 별도로 교육위원회 조례에 정해져 있음

III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안문환)

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(2007. 11. 14)되어 정원 총수가 34명 증원되었기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,763명에서 34명을 증원한 1,797명으로 하고,
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을 1,751명에서 1,785명으로 조정하였음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본 조례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규모가 고시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세부적인 인력운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**질 의 요 지**: 생 략

V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VI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